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52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전진숙·김정호·김남희

정을호 · 이정문 · 허종식

김윤덕 • 이인영 • 이연희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치료, 수습, 자원봉사, 취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
|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 | 설치 • 운영) ① |
|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 | |
| 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 |
|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 | |
| 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 | |
| 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 | 2 |
| 조, 복구, <u>치료</u> 등 현장대응업 | <u>치료, 수습, 자원봉사,</u> |
| 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 | 취재 |
| 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
| |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